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회칙

2018. 11. 19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회는 “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원우회”(이하 “본 회”라 함)라 칭한다.

제2조 (위치) 본 회는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함) 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회는 본 대학원의 설립정신인 ‘밀알정신’과 초교파적 독립교회를 지향하는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하여 본 대학원 원우들의 교육,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5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1.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본 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.
3.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6조 (구성)

1. 원우회의 임원진은 회장단과 각 대학원 대표로 구성한다.
2.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, 예배국장, 회계, 서기로 구성한다.
3. 각 대학원 대표는 일반대학원 신학과 대표,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대표, 신학대학원 각 학차별 대표, 보육대학원 대표, 사회복지대학원 대표로 구성한다.

제7조 (지도) 본 회는 본 대학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 및 대학원 교학처장의 지도를 받는다.

제2장 원우회장단

제8조 (지위)

1. 원우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.
2. 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예배국장은 원우회 예배 등 관련행사를 담당한다.
4. 회계는 원우회의 회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.
5. 서기는 원우회의 회의 및 제반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.

제9조 (선출)

1. 회장단 중 회장, 부회장은 11월 또는 12월 중 원우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고, 예배국장, 회계, 서기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2. 각 대학원의 대표는 각 대학원 원우회에서 선출한다.

제10조 (임원 후보자격)

1.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여야 한다.
2.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에 소속된 자여야 한다.
3. 불건전한 이단에 소속된 자는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.
4. 당선 후 위 1, 2호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즉시 회장단 자격을 상실한다.
5. 후보 등록 시 소속교회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보 신청서를 정한 기한 내에 원우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6. 원우회장은 후보 등록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후보등록 마감 7일 전까지 공고한다.

제11조 (투표)

1.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중복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.
2. 투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 (임기) 원우회장단의 임기는 당해 년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, 원우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

제13조 (신분보장) 원우회장단은 본 대학원 규칙에 의한 경우 외에, 전체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인한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동안 그 지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.

제3장 원우회비

제14조 (회비)

1. 원우회 회비는 한 학기 당 5만원으로 한다.
2.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회비 중 원우회장단의 운영비와 각 대학원 원우회의 운영비를 지급한다.
3. 원우회장단은 매 학기 초에 각 대학원 원우회의 회비납부 내역을 공지한다.

제15조 (회계)

1. 원우회장단은 운영비에 관한 세부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.
2. 원우회장단은 한 학기에 2회 이상(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중) 회계보고를 한다.
3. 원우회장단은 전기 회장단의 회계기록 및 영수증을 종전 회장단의 임기 후 3년 이상 보관한다.

제4장 회칙 개정

제16조 (회칙 개정)

1. 회칙 개정의 발의는 회장단, 각 대학원 대표 4인 이상 또는 원우회원 3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.
2. 회칙개정 발의 시에는 발의안과 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3.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원우회장단에서 심의하여 최소 투표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한다.
4. 회칙의 개정은 원우회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투표자의 1/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부칙

1. 본 회칙은 원우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투표자의 1/2 이상 찬성으로 제정한다.
2. 본 회칙은 통과한 날(2018년 11월 19일)부터 시행한다.